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금융투자회사의 성과급 지급 유보 결정이 부당하다는 제1심 판단을 뒤집고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B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원고는 B사가 자신에게 미지급한 이연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은 항소심에서 B사를 대리하여, (i) B사의 성과급규정 개정 연혁 및 취지에서부터 규정 전반의 체계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ii) B사의 성과급규정의 최상위 기본원칙에 따르면 이연성과급 지급의 유보가 가능하고, 이 같은 사정은 퇴사자인 원고에 대해서도 동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iii) 금융사지배구조법령과 금융당국의 모범규준에 따른 이연성과급 제도의 본질적 성격은 장기 성과 및 리스크와 연동된 미확정 보상이라는 점, (iv) 이연성과급 지급 유보 결정 당시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유보 사유가 명백히 존재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제1심 판결의 부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사의 항소를 인용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관련구성원

기영석
변호사

02-316-4021
ysgi@shinkim.com

김종수
변호사

02-316-1678
jsokim@shinkim.com

이세리
변호사

02-316-4034
srlee@shinkim.com

조찬영
변호사

02-316-4109
cyocho@shinkim.com

Copyright SHIN & KIM LLC. All rights reserved.